

대구대학교 ·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
**학술 · 연구 교류 협약서**

대구대학교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이하 양기관)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인력의 양성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·연구활동에 있어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양 기관은 과학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 유대강화와 상호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 협력하며,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**제2조(협동연구)**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이 연구사업을 함께 도출하여 학·연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다.

1.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및 개발
2.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 및 개발
3. 기타 실무협약에 따른 연구 및 개발

**제3조(학·연 협동연구 석·박사과정)** 양 기관은 고급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, 대구대학교 대학원 내에 학·연 협동연구 석·박사과정(이하 “학·연 과정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학·연 과정의 교과과정 중에서 기초 및 전공과목은 원칙적으로 대학원에서 운영하고, 실험 실습 및 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행한다.
2. 학위논문 지도는 해당 전공분야의 양 기관의 교수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. 학·연 과정의 입학전형 및 전형절차, 교육과정의 운영,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, 학위논문 제출과 심사 등 학위취득에 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.
4. 학·연 과정에 설치하는 전공분야 및 정원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

제4조(인력교류) 양 기관은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교원 및 연구원을 연구협력 또는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력 교류할 수 있다.

1. 양 기관의 추천을 받은 교원 및 연구원은 양 기관 겸임 및 위촉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2. 위촉된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강의수당, 논문지도수당 및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학술정보교류)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 교류에 적극 협력한다.

제6조(시설, 장비, 공간의 공동 활용) 양 기관은 연구 또는 교육 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양 기관의 장비, 시설 및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양 기관은 원활한 학술·연구 및 교육협력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
- ① 운영위원회는 양 기관에서 추천한 동수의 인사로 구성한다
-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협약기간) 양 기관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3년간을 협약기간으로 하되, 양 기관 중 한 기관이 상대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, 자동적으로 다음의 협약기간 3년이 연장된다.

2007년 06월 26일

이 용 두

대 구 대 학 교

총 장 이 용 두

金 起 協

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

원 장 김 기 협